

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2]

현역병 복무연한(제4조제2항관련)

구 분	육 군	해 군	공 군
1957년 8월 14일 이전 퇴역자	2년	3년	2년
1957년 8월 15일 이후 퇴역자	2년	2년(해병대 2년)	3년